

2024년 하반기 추가 선정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

2024년 하반기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. 6. 24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장인



1. 사업명 : 2024년 하반기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
2. 신청기간 : 2024. 6. 24.(월)~7. 5.(금), 9:00~18:00 (주말공휴일 제외)
※ 서울시 및 마포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)
3. 사업기간 : 2024. 8. 1.~12. 20. (4개월 20일 간)
※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
4. 모집인원 : 2개 사업, 13명 (단, 사업예산 등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)
※ 첨부: 2024년 하반기 추가선정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
5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
< 구비서류 >

< 필수사항 > 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- ① [마포구]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(희망 사업번호 기재, 붙임 사업목록 참조)
-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(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-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(신청자 및 가구원),
-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(신청자)
- ⑤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- ⑥ 구직등록확인증 (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 발급, 온라인 워크넷 발급)
- ⑦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▷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- 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자립준비청년, 청년 부상제대군인, 장애인 및 가족(장애인증명서), 가정폭력 피해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
- ▷ 여성기장(세대주) - 남편을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근로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▷ 우대 인정 사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
- ▷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6. 신청자격

○ 사업개시일(2024. 8. 1.)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마포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-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
-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99백만원 이하인 자
 ※가족의 범위: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(동거인 포함)
- 세대원 합산(동거인 포함) 기준 중위소득이 80% 이하인 자

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1)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※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2)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
 (단위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중위 소득 80%	1,782,756	2,946,087	3,771,726	4,583,930	5,356,588
가구원 수	6인	7인	8인	9인	10인
기준중위 소득 80%	6,094,695	6,811,995	7,529,295	8,246,595	8,963,895

※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3) 1세대 2인 참여자(중복 신청 시 자동탈락)

4)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
- 만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-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

※ 3개월 이상 참여 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

※ 지역공동체일자리, 어르신일자리,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간 포함

5)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6)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

7)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8)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[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야간대학(원) 대학생은 예외]

9)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
10)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7. 임금 및 근로조건

○ 임금 및 근무시간

구 분	근무시간	일 급	부대경비	주휴,연차수당
만65세 미만	1일 6시간, 주5일	60,000원	1일 6,000원	지급
만65세 이상 (1959. 7. 1.이전출생자)	1일 3시간, 주5일	30,000원		

※ 사업에 따라 출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

○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8. 선발기준: 재산 및 가구소득, 부양 가족 수, 공공일자리 참여 기간, (여성)세대주, 취약계층,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9. 합격자 발표: 2024. 7. 29.(월) (선발 상황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)

※ 선발자에 한해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

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폰 및 유선전화) 기재

※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대상은 선발 심사 시 제외되며, 별도의 탈락 안내 없음

10. 문 의 처: 마포구 고용협력과(☎02-3153-8694)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

11. 기타안내

가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나. 서울특별시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
다. 직무특성 상 필요한 자격·경력 보유자 우선선발 및 근로능력 없는 자 선발 제외

라. 배정인원 초과 등 상황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사업에 배치될 수 있음

마. 개별 사업별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(사업목록 참고)

바. 해당 사업은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에 따름

- 붙임 1. 2024년 하반기 추가선정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부.
2.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. 끝.